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sujain-de.co.kr)와 견본주택 예약제 관람을 병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제로 실시하며, 관람 예약은 당사 홈페이지(www.sujain-de.co.kr)를 통해 사전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61-741-7700)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0.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05.10.)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순천시 3개월 이상(2022.02.10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순천시는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ujain-d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순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조정지역 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순천시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1순위(해당지역) *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자	1순위(기타지역) *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자	2순위		
일 정	2022년 05월 20일(금)	2022년 05월 23일(월)	2022년 05월 24일(화)	2022년 05월 25일(수)	2022년 05월 31일(화)	2022년 06월 13일(월) ~ 2022년 06월 15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순천시 건축과 – 22216호(2022.05.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1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14층~27층 5개동 총 340세대

[특별공급 41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 33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2000275	01	101.9948A	101A	101.9948	24.7997	126.7945	67.5068	194.3013	42.9627	74	7	2	9	65	4
		02	101.9680B	101B	101.9680	24.8567	126.8247	67.4890	194.3137	42.9514	43	4	1	5	38	2
		03	125.6847A	125A	125.6847	29.7394	155.4241	83.1864	238.6105	52.9414	131	13	3	16	115	6
		04	125.8847B	125B	125.8847	29.7283	155.6130	83.3187	238.9317	53.0257	92	9	2	11	81	4
	합 계										340	33	8	41	299	16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101.9948A	101.9680B	125.6847A	125.8847B
약식 표기	101A	101B	125A	125B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동, 라인 구분	층 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물가액		계	계약시	계약일로 30일 이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일
					건축비	VAT				2022.10.12	2023.04.12	2023.10.12	2024.04.12	2024.08.12	2024.12.12	
101A	103동(1,3호) 104동(1,3호)	1층	2	89,055,000	331,768,182	33,176,818	454,000,000	20,000,000	2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2층	4	89,055,000	338,131,818	33,813,182	461,000,000	20,000,000	2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38,300,000
		3층	4	89,055,000	343,586,364	34,358,636	467,000,000	20,000,000	2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40,100,000
		4층	4	89,055,000	348,131,818	34,813,182	472,000,000	20,000,000	2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41,600,000
		5층	4	89,055,000	352,677,273	35,267,727	477,000,000	20,000,000	2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6~10층	20	89,055,000	360,859,091	36,085,909	486,000,000	20,000,000	2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1층 이상	36	89,055,000	365,404,545	36,540,455	491,000,000	20,000,000	2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101B	103동(2호) 104동(2호)	1층	1	89,032,000	323,789,091	32,378,909	445,200,000	20,000,000	2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44,520,000	133,560,000
		2층	2	89,032,000	330,152,727	33,015,273	452,200,000	20,000,000	2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45,220,000	135,660,000
		3층	2	89,032,000	335,607,273	33,560,727	458,200,000	20,000,000	2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45,820,000	137,460,000
		4층	2	89,032,000	340,152,727	34,015,273	463,200,000	20,000,000	2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46,320,000	138,960,000
		5층	2	89,032,000	344,698,182	34,469,818	468,200,000	20,000,000	2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46,820,000	140,460,000
		6~10층	10	89,032,000	352,880,000	35,288,000	477,200,000	20,000,000	2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47,720,000	143,160,000
		11층 이상	24	89,032,000	357,425,455	35,742,545	482,200,000	20,000,000	2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144,660,000
125A	101동(1,3호) 102동(1,2호) 105동(1,3호)	1층	1	109,740,000	403,872,727	40,387,273	554,000,000	20,000,000	3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2층	6	109,740,000	412,963,636	41,296,364	564,000,000	20,000,000	3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3층	6	109,740,000	420,236,364	42,023,636	572,000,000	20,000,000	3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4층	6	109,740,000	425,690,909	42,569,091	578,000,000	20,000,000	3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5층	6	109,740,000	431,145,455	43,114,545	584,000,000	20,000,000	3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6~10층	30	109,740,000	440,236,364	44,023,636	594,000,000	20,000,000	3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11층 이상	76	109,740,000	445,236,364	44,523,636	599,500,000	20,000,000	3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59,950,000	179,850,000
125B	101동(2,4호) 105동(2,4호)	1층	4	109,914,000	395,532,727	39,553,273	545,000,000	20,000,000	3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2층	4	109,914,000	404,623,636	40,462,364	555,000,000	20,000,000	3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3층	4	109,914,000	411,896,364	41,189,636	563,000,000	20,000,000	3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4층	4	109,914,000	417,350,909	41,735,091	569,000,000	20,000,000	3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5층	4	109,914,000	422,805,455	42,280,545	575,000,000	20,000,000	3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57,500,000	172,500,000
		6~10층	20	109,914,000	431,896,364	43,189,636	585,000,000	20,000,000	3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11층 이상	52	109,914,000	437,350,909	43,735,091	591,000,000	20,000,000	3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Ⅶ-0.197g)으로 표기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01A	101B	125A	125B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7	4	13	9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전체 건설량의 3% 범위)	2	1	3	2	8
합 계	9	5	16	11	4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 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규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전라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0)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3항에 의거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주택공급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아니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 등의 보유 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름)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등 옵션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 3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순천시 3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Ⅳ 청약신청 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2.05.20(금) (청약Home :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2.05.23.(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기타지역	2022.05.24.(화) 09:00~17:30		
	2순위		2022.05.25.(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시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의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자녀	•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 요구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입주자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직계존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를 산정한 경우	
		O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O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O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O	**비자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O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 요구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2.05.31.(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5.31 (화) ~ 2022.06.09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5.31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코로나 대응관련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당첨자 발표이후 적격심사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등의 업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분들께 개별안내를 통해 일정과 실시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격검증서류제출 및 계약일정이 불가피하게 연장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6.13.(월) ~ 2022.06.15.(수) (3일간) 10:00~16:00	견본주택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3-1번지)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간(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 2022.06.03.(금)부터 ~ 2022.06.09.(목)까지 / 7일간, 10:00~16:00 (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처	• 견본주택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3-1번지 / 061-741-7700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람. 단, 계약 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체결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시		O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O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O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이외)		O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O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O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 및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순천 조례 한양수자인 디에디션 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됨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 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혐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반환해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이며, 해당건설지역(순천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2020.09.22.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2.05.31.(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 및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Sh수협은행	1010-2197-1490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1동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001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 '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할 수 있고,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자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추후 중도금 대출 시 개인신용도 및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대출 제한이 될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18.09.11. 발표된「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구입 시 1주택 소유자에 기존주택 처분 및 입주의무 강화 등 예외허용조건이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 정부대책 및 사업주체와 대출금융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일자가 변경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 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공급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육아까페, 키즈스테이션,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 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 여부는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Ⅶ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무상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함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시	2022.10.12.	입주지정일	
101A	49,000,000	4,900,000	4,900,000	39,200,000	
101B	45,000,000	4,500,000	4,500,000	36,000,000	
125A	58,000,000	5,800,000	5,800,000	46,400,000	
125B	52,500,000	5,250,000	5,250,000	42,000,000	

2.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조정대상지역의 확장공급 금액으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사업주체 등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 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돌, 타일,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추가선택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해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 함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입주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단, 침실1의 내창 및 외창은 단창으로 설치됨)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가구, 디자인,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 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 질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일부 벽체 및 천장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개별 시공함에 있어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내부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됨)
- 단위세대 타입 및 기준층/최상층 별로 발코니 확장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타입 계약 체결 전, 확장/비확장 공간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일부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인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 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기본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가전옵션 및 가구옵션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시공 품질에 따라 설치된 난방용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발코니 창은 설치되지 않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음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인접 확장세대 확장 발코니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 안목치수(수평, 수직)가 일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전기배선기구, 통신배선기구 등의 제품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경우,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위치, 벽체두께, 환기구위치, 스프링클러헤드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천장은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별도의 보일러실 구획되지 않음)
- 상부세대가 비확장세대인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197-1490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1동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001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 '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 할 수 있고,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IoT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위치	총수량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2.10.12	입주지정일	
101A,B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제조사 LG전자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 2, 3, 4	6개소	RNW0720C2SP(거실) RNW020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RNW0230C2SP(침실2,3) RNW0200C2SP(침실4)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125A,B	선택1	거실, 주방, 침실1	3개소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선택2	거실, 주방, 침실1, 2, 3, 4	6개소	RNW0720C2SP(거실) RNW0320C2SP(주방) RNW0400C2SP(침실1) RNW0230C2SP(침실2,3 RNW0200C2SP(침실4)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됨(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 등의 관련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 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2안 선택시 실외기 2대로 설치 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 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마감자재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선택안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0.12	입주지정일
101A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주방 팬트리의 바닥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벽타일	거실+복도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클린존 미선택시)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2안(클린존 선택시)	3,150,000	315,000	315,000	2,520,000
	클린존(의류관리기+수납가구)	가구 + 의류관리기(S5MSB / LG전자)	-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장식장(유리 + 조명형)	주방	-	700,000	70,000	70,000	560,000
101B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주방 팬트리의 바닥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드레스룸 선택시)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2안(드레스룸 미선택시)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벽타일	거실+복도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클린존 미선택시 / 드레스룸 선택시)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2안(클린존 선택시 / 드레스룸 선택시)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3안(클린존 미선택시 / 드레스룸 미선택시)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4안(클린존 선택시 / 드레스룸 미선택시)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클린존(의류관리기+수납가구)	가구 + 의류관리기(S5MSB / LG전자)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고급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벽판넬+조명형 시스템선반+액세서리함)	침실4	-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125A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주방 팬트리의 바닥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벽타일	거실+복도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클린존 미선택시)	4,350,000	435,000	435,000	3,480,000
			2안(클린존 선택시)	3,550,000	355,000	355,000	2,840,000
	클린존(의류관리기+수납가구)	가구 + 의류관리기(S5MSB / LG전자)	-	4,250,000	425,000	425,000	3,400,000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장식장(유리 + 조명형)	주방	-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125B	바닥타일	거실+주방+복도+주방 팬트리의 바닥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드레스룸 선택시)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2안(드레스룸 미선택시)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벽타일	거실+복도 (유럽산-이탈리아산 타일)	1안(클린존 미선택시 / 드레스룸 선택시)	4,750,000	475,000	475,000	3,800,000
			2안(클린존 선택시 / 드레스룸 선택시)	4,250,000	425,000	425,000	3,400,000
			3안(클린존 미선택시 / 드레스룸 미선택시)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4안(클린존 선택시 / 드레스룸 미선택시)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클린존(의류관리기+수납가구)	가구 + 의류관리기(S5MSB / LG전자)	-	3,150,000	315,000	315,000	2,520,000
	붙박이장	침실2 붙박이장	-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고급형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벽판넬+조명형 시스템선반+액세서리함)	침실4	-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 2021. 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서는 안됨.**
-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거실, 주방, 복도, 주방 팬트리의 바닥과 거실, 복도의 벽 타일은 패턴의 특성상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바닥타일 미 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로 시공되며, 벽 타일 미선택시 벽지가 시공됨
- 주방 장식장은 101A와 125A 타입만 선택 가능하며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가전 유상옵션 선택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고급형 드레스룸은 101B와 125B 타입만 선택 가능함
- 타일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침실 붙박이장의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함
- 125A타입은 침실2 붙박이장을 선택했을 시 붙박이장 배치 위치가 101A, 101B, 125B와 상이하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125A의 침실3 붙박이장은 125B타입과 유사 디자인(색상 및 크기는 상이함)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유럽산 벽타일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 아트월의 기본 벽타일은 변경되지 않음

3. 가전/가구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및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0.12	입주지정일
전타입	LG전자 오브제냉장고	BC1L1AA1(냉장) + BC1F1AA(냉동) + BC1K1AA1(김치)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LG전자 식기세척기	DUB22SB2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 추가선택 가전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빌트인 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개별선택이 불가함
-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됨
- 상기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가구와의 이격거리(틈새)가 있음

4. 태양열차단필름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제품명	제조사 및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10.12	입주지정일
101A	전체창 (실외기실, 내부발코니창호 제외)	후퍼옵틱코리아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101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125A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125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태양열 차단 필름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 창은 시공 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 차단 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 시 무지개 현상이 생길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에어컨 및 기타 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Sh수협은행	1010-2201-1731	㈜한양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101동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추가 선택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선택품목 선택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식당, 복도, 침실 전체, 드레스룸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 현관 <타일> 욕실(시멘트 몰탈포함), 발코니/보조주방(세탁실), 실외기실	바닥 난방(욕실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 및 발코니/보조주방 바닥 방수, 배수 슬리브, 우수, 배수, 선홈통
2) 벽,천장	<벽> 벽지(초배지포함) 및 벽체 마감, 거실 아트월 타일, 주방 세라믹 및 욕실 락패널,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포함 <천장>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몰딩 등 마감 일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져)
3) 조명기구, 배선기구	각실 조명기구, 배선기구 일체(욕실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4) 욕실	<위생기구> 비데,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욕실락패널, 천장재(천장틀, 배기휀 포함), 샤워부스, 잰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 쿡탑, 전기오븐,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주방TV	설비배관, 소방관련 시설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문틀(상부 덧판, 문선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 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현관창고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드레스룸 도어 및 가구(시스템가구 및 조명 포함), 붙박이장,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시스템선반(세탁실),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에어컨매립배관(거실, 침실1), 하향식 피난구

3)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101A	101B	125A	125B
마이너스 옵션금액	35,623,000	35,632,000	43,667,000	43,72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의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유상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조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인접세대 주민과의 불화 및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자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 기본 선택 품목 – (무상 옵션,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

주택형	선택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비고
전타입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빌트인 냉장/냉동/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선택 가능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뚜껑형	

Ⅷ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당첨자 성명을 인지 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견본주택 내「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를 비치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하시는 계약자는 허가 기준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 진행 중 공정, 현장여건, 주변환경,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최초의 기준과 최종 시공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허가여부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단지 저층부 마감 등), 단지 내 포장부위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순천시 및 그 외 타 지역, 타사 또는 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 이후 및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함.
  [대상세대 : 101A타입(104동301호), 101B타입(104동302호), 125A타입(105동301호), 125B타입(105동302호)], (해당 세대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1)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 및 부력앵커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재활용처리장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에어컨 실외기,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주변 세대 저층 일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3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차는 지하4층, 지하3층, 지하2층에서 이루어지며 차량 진입은 지하4층과 지하2층에서 이루어짐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 및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 유지 및 보수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의 경우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지하 3,4층은 차로높이 2.3m 이상, 주차구획 2.1m 이상, 차로 6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지상의 비상차량동선은 쓰레기수거차, 택배차량, 이삿짐차량의 이동에 쓰일 수 있음
- 항공장애등이 설치되는 경우,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전지판)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 단지로서,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구분 계획되어 있으나, 외부 공간의 경우 단지 공용시설로 이용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야 함**
- 당 사업지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로, 육아까페, 키즈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자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람

- 당 사업지는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용과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구분 계획되어 있음
- 105동 남측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부 일부 세대에는 근생시설의 입점 점포 종류에 따라 생활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토지면적은 확정 측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하며 주차는 단지 내에 별도 구획(근생주변 옥외 주차장)되며, 이에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점시설에 따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변동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근생의 형태(높이 및 크기, 면적등)는 고시된 도로선형에 준하여 설계된 것으로, 추후 근생형태 및 주변현황은 분양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주체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모든 공용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공동 사용함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한 입주지연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암반 발견, 전염병,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짜리 미만에서 절삭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이면서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대지 분할 등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차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홍보물 등)

-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입주민 회의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물(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각종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컷, 현수막, 온라인광고, 영상광고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전시용 가전제품, 연출용 조명 등) 등은 관람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들이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현관중문, 드레스룸),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벽지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세대는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CG,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에는 125A, 125B 두 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101A는 125A와 디자인 컨셉이 유사하고 101B는 125B와 디자인 컨셉이 유사함. 단, 평면의 특성에 따라 제공품목 및 적용되는 디자인 컨셉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 사양에 따라 좌우대칭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
- 견본주택 및 CG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패턴,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1)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헤드, 점검구
  2)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및 발코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시 확인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배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 내 표현되는 GUI 디자인은 예시로 표현된 사항이므로 본제품 설치시 디자인 및 기능이 변경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수 있음

■ 설계고지사항 (단지 외부여건)

- **청약 전에 사업부지(현장)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와 인접한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방음벽의 설치요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당 사업지 대지경계에 면한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의 레벨에 따라 단지 외곽에 면하여 계획된 동의 일부 세대는 단지 외부 통행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당 사업지 남측, 서측 인접도로는 15M로 확장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께서는 해당 도로의 세부계획을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도로와 당 사업지 단지내 레벨차이에 따른 보행자 동선 계획(외부계단 등)은 차후 실 시공시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정산은 없음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녹지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남서측, 서측으로는 15M 도로 건너편으로 최대 14M의 보강토옹벽이 설치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이로 인한 미관의 저해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높이 및 형식, 외관, 색상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입주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2동, 103동 북측으로는 1.0m~4.0m 이상의 옹벽과 1.0m~8.0M 높이의 사면이 설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조망에 불리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높이 및 형식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봉화산 근린공원 –신월지구가 위치하여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물 및 공원계획은 상세 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람
- 101동 북동측에는 침사지가 위치하며 (유수량은 빗물의 유입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유수지의 특성상 해충, 개구리 및 기타 야생동물, 유수오염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101동 및 102동 북측에는 운동시설 및 공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프라버시 및 환경권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해당 인접 세대 입주자께서는 필히 관련 계획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101동 서측, 105동 남서측에는 사업지 외부로 가공조경석 실개천이 계획되어 있으며 유수량은 빗물의 유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실개천의 특성상 해충 및 악취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101동 서측으로는 봉화산 근린공원 시설물 중 만남의 광장이 있으며 목재평상, 옥외화장실, 먼지떨이기, 음수대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1동 인접세대에서는 소음, 조망권, 악취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해당세대는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103동 북동측으로는 현재 송전탑 및 송전로가 위치하여 있으며(분양 시점 당시 송전탑 이설 예정)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설 예정이며, 103동 북측 약 100미터 거리의 위치로 이동 설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접하는 103동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송전로의 지중화 및 추가적인 이설은 불가능하며 이설 시기는 관계기관 및 인허가 관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인접세대는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외부 103동 동측의 기존 송전탑 접근을 위한 도로는 존치 예정이며 신규 이설을 위한 장소 접근을 위한 도로가 추가적으로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송전탑 보수를 위한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인접 103동 104동 세대에서는 소음 매연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에서는 주변 세부 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은 공원 또는 산, 임야,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지 주변에 분묘 등이 위치하여 분묘조망,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북측에는 봉화산 근린공원 신월지구 시설물 중 놀이시설물이 위치하여 있으며 해당 시설물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조망, 프라이버시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해당세대 계약자께서는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본 단지 주변으로 분묘가 101동 북측 3개소, 102동 북측 1개소 103동 북측 6개소, 103동 북동측 8개소, 104동 동측 및 북동측 9개소 위치하며 이로 인해 분묘조망,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공원 및 공원시설과 인접하여 공원 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04동 105동 사이, 104동 북동측 어린이 놀이터, 104동 남동측 주민운동시설 주변 지하층에는 발전기실, 기계실 D.A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해당 인접 세대에서는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지역 상수도 인입 압력부족으로 조례운동 가압장 증설에 따른 운영 관리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당 사업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장으로, 주변 공원, 산등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지형 특성상 저층부 및 중층부에는 일조량 부족 및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설계고지사항 (단지 내부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은 2021년 11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최종 변경 사업계획승인일은 2022년 04월임)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 (「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위탁 함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주동 형태에 따라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및 색상,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저층부 일조량 확보를 위한 반사경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 101동과 102동 사이에는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이며 이로 인해 101동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측에는 지하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운행되는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이며 이로인해 104동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5동 남측에는 지하4층부터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예정이며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 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음으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견본주택 내 비치된 일조보고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사, 위탁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동측에는 그린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인접동은 이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세대의 일조환경 개선을 위하여 105 동의 상부에는 장치형 자연채광 시스템 설비(태양광 반사판)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이 장치로 인해 눈부심, 시선차단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 될 수 있음. 이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동지기준 일조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 있으며, 불만족하더라도 추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세대의 실은 거실창만 적용됨. (적용 세대는 101동 1호라인, 125A타입 2층세대부터 9층세대까지이며 본 시스템은 거실 부위에만 적용 예정이며, 일부세대는 침실 일부에 설치될 수 있음)
  (그 외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일조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 장치형 자연채광 시스템설비의 설치(태양광 반사판) 위치는 실시공시 일조 조건 및 시공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04동 측벽,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옥탑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며 경관조명 설치로 일부 인접 세대는 조명 작동시 눈부심 등 환경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민 공동시설과 관리사무소는(105동 하부 지하2층, 지하 3층) 지하주차장과 면한 데크에 설치되며, 주요 실은 환기창 및 채광창은 외기에 면해 있으나, 지상층에 비해 일조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음 (입주자께서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경로당은 103동 하부 지하1층(데크층) 위치하여 인접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해당세대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지하1층(데크층)에는 키즈스테이션, 키즈그라운드 및 육아까페가 위치하여 인접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해당세대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은 104동 지상 1층에 위치하여 인접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사오니 해당세대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리플렛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급배기시설 (환기구 등) 및 D.A. (Dry Area) 위치, 크기, 개소,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당해 단지시설물의 변경과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 및 승인관청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본 아파트의 색채 및 입면은 사전에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외벽색채, 입면, 옥탑구조물은 디자인 자문 및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은 수자인 전용 표준디자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상 1층, 2층, 최상층에는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동체감지기)가 설치됨(1층이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공용부)인 경우에는 2층에만 설치)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함
- 1층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 급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관련 세부 공간, 휴게시설, 포장 및 식재계획 등은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옹벽, 조경석,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전지판)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위치는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입주민회의실)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 모형도 또는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여야 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동측 출입구에 1개소 설치되며 추가적인 문주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고,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으며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됨. 또한 이는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 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여성우선주차, 경형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재활용처리장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접수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633대, 근린생활시설5대 별도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105동 하부 지하3층에 5대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접구간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주변단지의 존재 유무 및 추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중앙광장(수경시설, 유아놀이터, 휴게공간 조성),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103동 전면~104동 측면에 어린이놀이터1, 104, 105동 전면에 어린이놀이터2, 중앙광장에 유아놀이터 계획) 주민운동시설(104동 전면에 주민운동시설 계획),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 LIGHT)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앙광장에는 수경공간이 설치 예정이며 수경공간의 유수량은 운영주체의 연중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경공간으로 인한 해충, 악취,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계약자께서는 해당 공간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수경시설의 인계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악취, 오염수, 해충, 개구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기 바람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함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영구 배수, 제습장치, 냉/난방기 등)로 인한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해 있는 일부 세대는 지상, 옥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 의해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각 시설물의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급배기시설 (환기구 등) 및 D.A. (Dry Area) 위치, 크기, 개소,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순환로포함)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및 공원구역의 순환로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 유출수 배수를 위해 영구배수공법 및 부력앵커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전기료 및 오수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발생시에는 공동관리비로 부과됨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
- 부대시설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등의 일부 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함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 필로티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필로티 내부 천장고는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에 제습기(지하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제어판넬이 설치되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계획되어 있는 보도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2항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하여,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중계기 설치 위치 : 지하3층 휀룸#2, 휀룸#4)
- 주동 지붕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6대, 완속 14대, 이동형콘센트 50EA를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하며, 입주 후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무인택배는 지하2층 주차장에 2개소 설치 예정으로, 1구역(101동,105동), 2구역(102동,103동,104동)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위치를 이동 요청 할수 없음.
- 단지내(104동 동측)에 오수펌프장이 계획되어 단지내 소음 및 악취로 인한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사오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오수펌프장은 추후 배기관이 건물 외부로 노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악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 및 부력앵커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설계고지사항 (단위세대 및 마감재 등)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팜플렛,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어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새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 될 수 있음
- 거실의 에어컨 냉매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냉매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야 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및 변색의 우려가 있음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2(보조주방) 및 기타 출입문의 크기에 따른 가전, 가구 등의 출입, 설치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 바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모든 옵션 및 선택형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하며, 견본주택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됨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적용 세대가 상이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세대분전반 및 세대단자함의 사양 및 설치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관디딤판의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세라믹 등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패턴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본 공사시 세라믹, 포세린 타일, 락패널의 경우 재료와 패턴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이 불가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조닝별 생활쓰레기처리공간(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쓰레기보관소 5개소 : 101, 102동 측벽 사이 1개소, 102, 103동 측벽 사이 2개소, 105동, 어린이놀이터2 사이 1개소, 104동 출입구쪽 1개소가 있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사업주체의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
- 실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외부마감재(저층부) 시공으로 인해 간섭되는 외부창호의 규격이 축소 될 수 있으니 청약접수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세대별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에는 도시가스 배관 및 계량기가 설치됨.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위세대에 시공된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와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인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음
- 세대 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락패널이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하부 및 붙박이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침실1 도어에는 모티스타입, 그 외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문에 한해 고정부 모서리 1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천정 내부에는 락패널이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하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거실,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보조주방(세탁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천장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내 환기설비는 전열교환기가 적용되며 세대 내 디퓨져 위치는 본 시공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 전열교환기 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교차되어 설치되므로 동일타입이더라도 세대마다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에는 추후 입주자가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에 냉매 매립배관이 설치 되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미설치 됨.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사향으로 동일 타입에서도 동 호수에 따라 그릴 창의 색상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쿡탑은 기본 설치되며 이와 무관하게 가스 배관이 설치됨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함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씽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주방 씽크대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씽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와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필로티 상부 층 세대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내 위생기구, 수전 및 악세서리의 위치는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 될 수 있음
- 침실이 인접세대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선반의 배치에 따라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콘센트 및 통신수구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101B, 125B TYPE 침실4 유상옵션선택(고급형 대형 드레스룸)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사양 및 회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고지사항 (기타)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접수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창호의 형태가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변경이 불가하여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새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 미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미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하부층의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되거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하여 있는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하여 발코니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현장의 단위세대 욕실은 건식공법으로 시공되어져 있음(조적+골조위 타일 접합 방식이 아님).
- 당 현장은 욕실 벽에 락패널로 마감되며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새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아파트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새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는 각 동호별 해당타입과 전용면적이 같은 최상층 세대가 적용됨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마감에 따라 동일 타입 이더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이 상이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 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2~3개층이하)는 석재 및 뿜칠 수성페인트, 필로티 내부 공간은 수성페인트 및 석재뿜칠, 고층부는 수성페인트, 외부 노출 옹벽 등은 수성 페인트 및 석재뿜칠로 마감
- 단지의 디자인은 전라남도 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향후 경관재심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옥상조경 식재, 형태, 면적은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경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예정인 어린이집의 경우 향후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학교관련 유의사항

• 금회 공동주택 사업 예정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순천왕조초등학교' 임.
•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초등(중)학교 : 순천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sced.jne.go.kr), 문의 061-729-7723]
• 고등학교 설립 및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061-260-0852)에 문의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 순천시 및 인허가 관청의 도시계획시설(주변 도로, 도로확장공사)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지 주변에 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세대는 주거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시기 전에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모형 및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선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의 도로 폭이며 현황 도로 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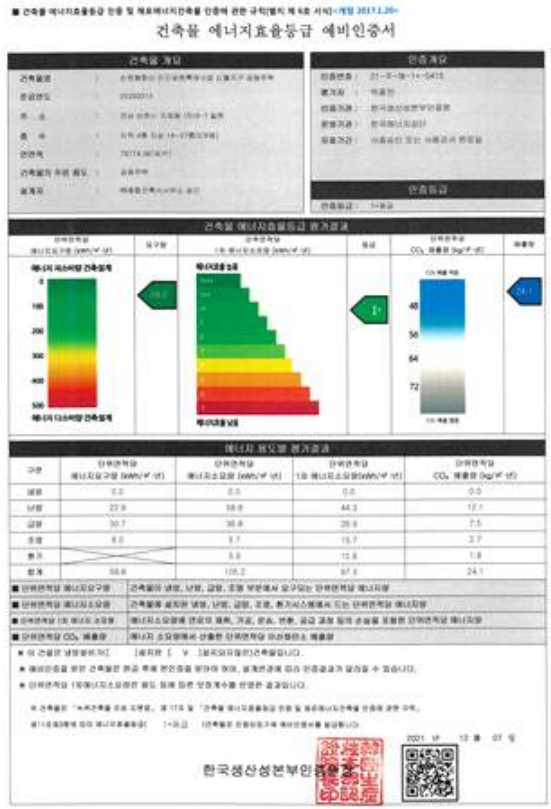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통신	비고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태백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코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989,596,400원	399,426,000원	280,500,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제 01292022-101-0004000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31,368,720,000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사항

○ 관리형토지신탁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그린산업개발(주)"(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이하 "수탁자" 라 함), 시공사 "㈜한양","헬시피플(주)"(이하 "시공사"라 함) 및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특약은 본 계약 여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 해석한다.

① 본 사업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사업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과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그린산업개발(주)"가 책임을 부담한다.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그린산업개발(주)"와 수탁자(매도인) "코리아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그린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매도인)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그린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 된다.

③ 분양계약자는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이행,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등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에 대해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그린산업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④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다.

⑤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부담한다.

⑥ 본 사업 전체 분양관련 금원은 "코리아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상기 계좌로 입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⑦ 분양계약체결 후 30일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자의 책임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완료 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분양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경우 위탁자의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한다(단, 분양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가 위탁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⑧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그린산업개발(주)와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한양, 헬시피플(주)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⑨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주소	등록번호
매도자 겸 수탁자	코리아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110111-2937831
시공사	주식회사 한양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110111-0144347
	헬시피플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8-1, 2층(석현동)	200111-0533038
위탁사	그린산업개발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43, 3층(동인빌딩)	201311-0078576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03-1번지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 www.sujain-de.co.kr

■ **분양문의 : 061-741-7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조례한양수자인 디에디션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2019.12.06., 2020.1.1., 2020.4.17., 2020.9.29., 2021.1.1., 2021.2.2. 개정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람